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 
제249회 제1차 정례회 (2021. 6. 1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최국모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1-57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5월 21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1년 5월 24일(월)

### 2. 제안사유

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위임사무 규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일부를 개정함

### 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1항1)

### 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의 정비를 위해 제출된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」 별표에 수임기관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조항과, 보건소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조항을 각각 삭제

1)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하고자 하는 바, 이는, 각각의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인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.

-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가 신설되어 수임기관을 동장으로 하였으며 이는 2020년 8월 18일 「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정보를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.
- 그 밖에 약무에 관한 사무 등 보건소 소관 위임사무의 개정은 약사법 등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각 개정내용은 안전을 참고하기 바람.
- 위와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 또한, 보건소 소관 공무원의 보건소 내 전보 규정의 삭제, 그리고 구의회 사무국장이 수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이 역시 지금까지 승급 업무를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